

운 전 자 격 확 인 증

- 1. 성 명
- 2. 주민등록번호
- 3. 운전면허번호

25mm

사	진

30mm

위의 사람은 자동차운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
직할시
도

화 물 자 동 차
용달화물자동차
개별화물자동차

운송사업조합이사장 (인)

(뒷면)

연 월 일	기 재 사 항 변 경	비 고

비고 : 기재사항 변경란에는 주소변경, 자격증 재교부 기타 변경사항을 기재한다.